##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04

발의연월일: 2020. 7. 30.

발 의 자: 장철민·황운하·이상직

양이원영 · 신정훈 · 조승래

김민석 • 전혜숙 • 윤재갑

강민정 • 박성준 • 이성만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68조제1항에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가산금을 적용할 수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. 그럼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없이 단지 조례를 통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음.

이에 가산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(안 제68 조제4항 신설). 법률 제 호

##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수돗물의 요금,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4조및 제30조를 준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산금에 관한 적용례)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수돗물의 요금,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ক্	]	행		개 정 안
제68조(요금	등의	강제징수)	1	제68조(요금 등의 강제징수) ①
~ ③ (생	략)			~ 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			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
				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
				제1항의 수돗물의 요금, 급수설
				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
				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
				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
				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.
				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
				「지방세징수법」 제14조 및
				제30조를 준용한다.